



#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기획재정부

기획재정부는 경차 유류세 환급 및 택시 LPG연료 면세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. 관련내용을 게재한다.

## 대통령령 제 호

###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2조의2(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) ① 법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,000cc 미만의 자동차”란 배기량 1,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.6미터, 너비 1.6미터, 높이 2.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.

② 법 제1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. 이 경우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,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

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.

③ 법 제1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환급대상자”라 한다)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용카드업자”라 한다)에게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(이하 이 조에서 “환급용 유류구매카드”라 한다)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111조의2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가보훈처장 및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관할 관청”이라 한다)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,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,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」



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명부 등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및 관할관청은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할관청은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만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.

- ⑤ 제4항에 따른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.
- ⑥ 신용카드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⑦ 법 제1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)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- ⑧ 제7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.
- ⑨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

서로 통보하여야 하고,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.

- 1.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 - 2. 환급대상자가 법 제111조의2제7항에 따라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
  - 3. 법 제111조의2제9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
  - ⑩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를 관할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.
  - ⑪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.
  - ⑫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의한다.
- 제1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12조의3(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) ① 법 제111조의3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택시운송사업자”라 한다)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용카드업자”라 한다)에게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(이하 이

조에서 “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”라 한다)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도지사의 권한이 시장·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·군수를 말한다)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이 조에서 “관할관청”이라 한다)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법 제111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면제대상 부탄의 수량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)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면제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.
- ⑤ 관할관청,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,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.
  1. 택시운송사업자가 폐업 또는 면허양도 등으로 더 이상 택시운송사업자에

-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
2.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11조의3제6항에 따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
  3. 법 제111조의3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
  - ⑥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.
  - ⑦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의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2조의2제3항·제4항·제6항·제10항·제11항·제12항 및 제112조의3제1항·제2항·제6항·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〈신 설〉</p>	<p>제112조의2(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) ① 법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,000시시 미만의 자동차”란 배기량 1,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.6미터, 너비 1.6미터, 높이 2.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.</p> <p>② 법 제1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. 이 경우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,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.</p> <p>③ 법 제1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“환급대상자”라 한다)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용카드업자”라 한다)에게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(이하 이 조에서 “환급용 유류구매카드”라 한다)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법 제111조의2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가보훈처장 및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관할관청”이라 한다)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, 「자동차관리법」</p>

현 행	개정안
	<p>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사자료,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명부 등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및 관할관청은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할관청은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만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.</p> <p>⑤ 제4항에 따른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.</p> <p>⑥ 신용카드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⑦ 법 제1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)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</p>



현행	개정안
	<p>정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⑧ 제7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.</p> <p>⑨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,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li> <li>2. 환급대상자가 법 제111조의2제7항에 따라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</li> <li>3. 법 제111조의2제9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</li> </ol> <p>⑩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자자료를 관할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⑪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⑫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「여신전무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의한다.</p> <p>제112조의3(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</p>

현 행	개정안
<p>〈신 설〉</p>	<p>면제) ① 법 제111조의3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택시운송사업자”라 한다)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「여성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용카드업자”라 한다)에게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(이하 이 조에서 “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”라 한다)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도지사의 권한이 시장·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·군수를 말한다)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이 조에서 “관할관청”이라 한다)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법 제111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면제 대상 부탄의 수량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)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</p>



현 행	개정안
	<p>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면제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.</p> <p>⑤ 관할관청,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,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.</p> <p>1. 택시운송사업자가 폐업 또는 면허양도 등으로 더 이상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p> <p>2.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11조의3제6항에 따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</p> <p>3. 법 제111조의3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</p> <p>⑥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⑦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의한다.</p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	
연락처	(02)2150-9243